

2019년도 3/4분기

#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19. 10.

감사위원회

# 1. 개요

## □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  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## □ 보고대상

- 기 간 : 2019. 7. 1. ~ 9. 30.(2019년 3분기)
-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(원순씨 핫라인) 및 오프라인(우편, 방문 등)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.

## □ 접수결과

- 2019년 3분기 총 141건 접수

[표 1] 2019년 3분기 창구별 월별 접수현황 (단위 : 건)

접 수 창 구	합 계	7월	8월	9월
공 익 신 고	41	20	11	10
공직자비리신고	96	26	41	29
부 정 청 탁	3	-	3	-
퇴직공무원특혜	1	1	-	-
합 계	141	47	55	39

※ 전 분기(2019년 2분기) 접수 건수 200건에 비해 29.5% 감소.

※ 전년 동분기(2018년 3분기) 접수 건수 260건에 비해 8.4% 감소.

## 2.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

### □ 제보 경로 분석

[표 2]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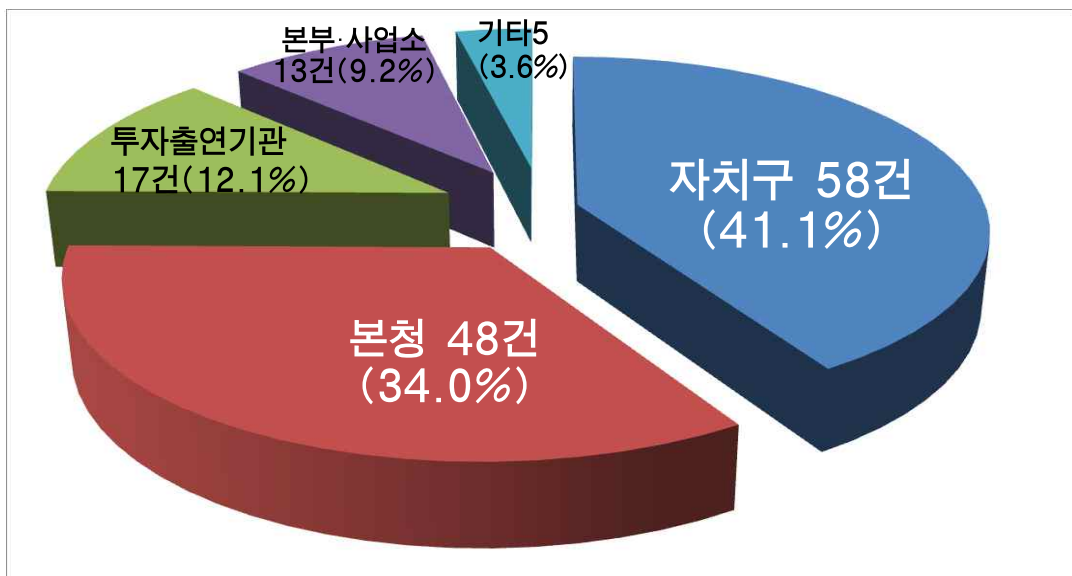
(단위 : 건)

경로	합 계	온 라 인 홈페이지/모바일	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	기 타 응답소/우편/방문/팩스
접수건수	141 (100%)	125 (88.7%)	14 (9.9%)	2 (2.4%)

\*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

### □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

-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58건(41.1%)으로 가장 많았음.
  - 건축법/시설물안전법/공동주택관리법 등 공익신고 17건.
  - 복무·업무부적정 등의 공직자비리신고 40건, 부정청탁 1건.
- 본청 소관 사무 제보 48건(34.0%), 본부/사업소 소관 13건.(9.2%)
  - 본청의 경우 공익신고 9건, 공직자비리신고 36건 등 접수.
  - 본부/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4건, 공직자비리신고 9건.
-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17건(12.1%), 기타 5건.(3.6%)
  -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공익신고 6건, 공직자비리신고 11건.
  - 기타 5건은 취하 및 불명확한 제보 등이 해당.



# 3. 공익제보 분류

## □ 제보내용의 분류

○ 접수된 141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114건

[표 3]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 (단위 : 건)

총계	공익제보 해당 114건		일반민원/기타
	부패신고	공익신고	
141 (100%)	90 (63.8%)	24 (17.0%)	27 (19.2%)

\* 청원/제안/건의 등 일반민원 성격 제보는, 공익제보로 보기는 어려우나, 공익제보 처리에 준하여 접수 답변하고 있음

### ※ 조례상 ‘공익제보’ 해당 신고 범위

구 분	개 요	신고 대상 행위
부패 신고	부패방지법 제2조(정의) “부패행위”신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</li> <li>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<b>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</b>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</li> <li>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</li> </ol>
공익 신고	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“공익침해행위”신고	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<b>284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</b>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	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	공정한 업무수행, 부당이익의 수수금지, 업무숙지의 의무,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, 인지도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 위반 등

## 4. 제보내용 유형 분석

### □ 제보 세부내역

#### ○ 부패신고 해당 90건 세부 내용

[표 4]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분	소관기관	건수	내 용
금 품 수 수	본 청	2	선물이나 물품 수수 관련 의심사항
	소 계	2	
복 무	본 청	7	초과근무, 출장 부정 또는 근무태만, 품위손상 등 공무원 복무관련
	본 부 · 사 업 소	2	
	자 치 구	9	
	투 자 출 연 기 관	6	
	소 계	24	
업 무 부 적 정	본 청	3	업무 추진 과정 중 고의 또는 미숙/부주의 행위 관련 (업무 부당행위 혹은 업무소홀)
	본 부 · 사 업 소	2	
	자 치 구	15	
	투 자 출 연 기 관	3	
	소 계	23	
위 탁 시 설 부 정	본 청	15	위탁시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등 의심
	자 치 구	2	
	투 자 출 연 기 관	1	
	소 계	18	
인 사	본 청	4	채용, 승진, 근무평정 등 부적정 인사 관련 의심사항 관련
	본 부 · 사 업 소	2	
	자 치 구	6	
	투 자 출 연 기 관	3	
	소 계	15	
불 공 정 계 약	본 청	5	입찰 계약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등
	투 자 출 연 기 관	2	
	자 치 구	1	
	소 계	8	
총	계	90	

\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## ○ 공익신고 해당 24건 세부 내용

[표 5]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 분	건수	소관기관	조치 상황	내 용
건 축 법	6	자 치 구	조치2, 개선1, 해당없음2, 조사중2	불법 증축·변경, 준공허가여부, 안전관리 등
문 화 재 법	2	본 청	개선1, 조사중1	문화재 관리부실 등
장 애 인 복 지 법	2	본청·자치구	개선1, 조사중1	시설장 전횡 및 장애인인권침해
공 동 주 택 관 리 법	2	자 치 구	조사중2	아파트 시설관리 특정업체 선정 등
옥 외 광 고 법	2	자 치 구	조사중1, 해당없음1	위법 의심 간판 신고
전 기 사 업 법	1	본부 사업소	개선1	내동설비 안전관리
대 기 환 경 보 전 법	1	본 청	개선1	매연 신고
시 설 물 안 전 법	1	자 치 구	개선1	제방 안전침해 신고
폐 기 물 관 리 법	1	기 타	해당없음1	공초 무단투기
개 인 정 보 보 호 법	1	자 치 구	해당없음1	공공시스템 접속 관련 범위만 의심
의 료 법	1	기 타	조사중1	병원 간 의료진 중복
물 환 경 보 전 법	1	자 치 구	해당없음1	오폐수 무단배출 의심
건 설 산 업 기 본 법	1	투 출 기 관	해당없음1	아파트 재도장 업체의 등록 적합 여부
산 림 자 원 법	1	자 치 구	조사중1	불법벌목
노 인 복 지 법	1	자 치 구	조사중1	실버센터 입소자 복귀 제한
총 계	24			

\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## 5. 처리 결과 및 조치 성과

### □ 처리 내역 ('19년 3분기)

[표 6] 접수제보 처리 현황

(단위 : 건)

총계	처분 및 개선 32		종결 30				조사중	취하
	처분(조치)	개선 등	해당 없음	증거 불충분	중복 종결	권한 없음		
141	7	25	28	2	-	-	60	19

※ 개선 등 내역 :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
(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5항)

### □ 처분(조치)사항

[표 7] 공익제보 조치 결과(요구 포함)

번호	신고구분	신고 내용	처분기관	조치 내역
1	부패신고	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기준 위반	자치구	11명 1,350천원 반환조치
2	부패신고	입찰 제안서 심사시 평가절차 부적정	본 청	경징계1, 훈계1
3	부패신고	투출직원의 복무 태만	투자출연기관	훈계1
4	공익신고	불법구조 변경 및 증축	자치구	시정조치를 위한 사전통지1건
5	부패신고	공무원 여성비하 및 유흥업소 출입	본 청	훈계1
6	공익신고	원룸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 등 피해	자치구	시정조치를 위한 사전통지 6건(주차장2, 주택4)
7	부패신고	구 공무원의 구청 앞 가게 운영	자치구	훈계 1